

#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

사회복지법인 충도원  
**익산원광요양원**

# 운영규정개요

## 1. 입소정원

- 35명

## 2. 입소계약

### (1) 입소대상

◎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시설급여 1~5등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소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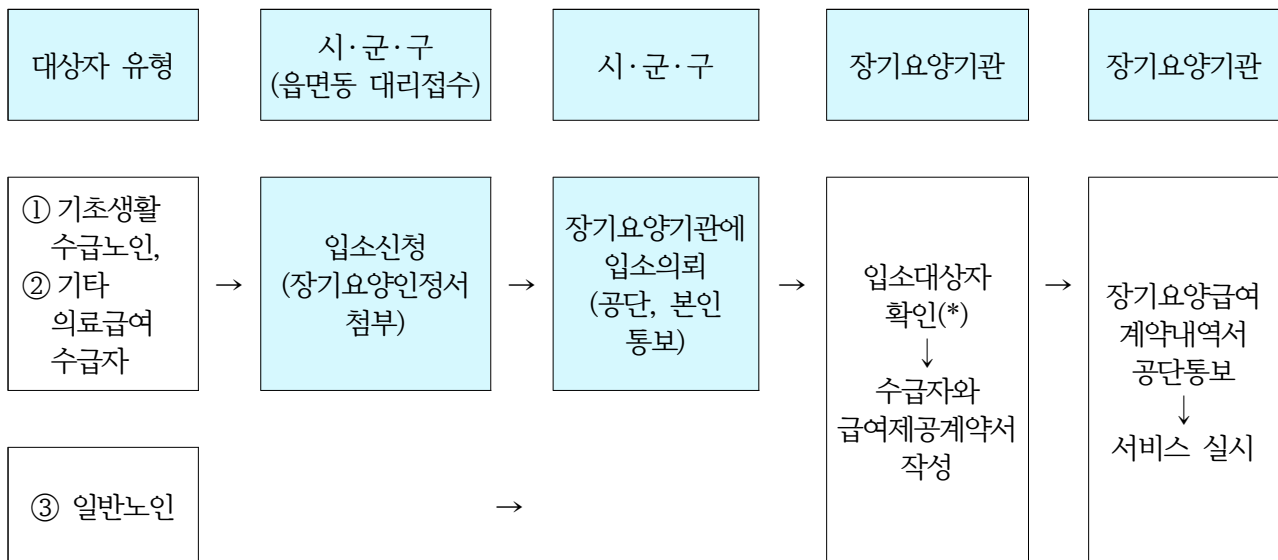
### (2) 입소절차

◎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

-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~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.

-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지사)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 → 장기요양인정서수령  
→ 장기요양기관 입소

### 〈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〉



# 운영규정개요

## 가.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

1)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(장기요양인정서 첨부, 입소·이용신청서 제출)

※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

○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(시설급여 이용가능)를 첨부하여야 하며, 신청접수는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

2)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

※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

○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,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

○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"4.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"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

3)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(별지 제 10호 서식)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

4)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○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

○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

5)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

○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·내용·비용 등,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
○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

6)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

# 운영규정개요

## (3) 구비서류 및 입소계약

### 가. 구비서류

입소자는(이하 “갑” , “을” 이라 하다)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서(입소계약서)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, 각 1통씩 보관한다.

(계약서류) “을” 은 입소계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기요양인정서 1부
2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.
3. 건강진단서(전염성유무확인용) 1부.
4. 의사소견서, 골밀도 검사지 1부.
5. 가족관계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등본 1부
7. 통장(원광새마을금고), 도장 또는 체크카드

### 나. 입소계약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 약 당 사 자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용자<br>(갑)          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<br>(인증번호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자택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12%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8%경감대상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공자<br>(을)           | 시설명    | 익산원광요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종류          | 노인요양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장 성명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063-862-8882-3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-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또는 보호자<br>(병) | 성 명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계           | ‘갑’의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
|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자택)<br>이동전화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운영규정개요

1) **계약목적** -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2) **계약기간** -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, 시설과 신원 인수인(입소자)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## 가) 계약종료

- ① 입소자 사망했을 때
- ② 시설이나 입소자(신원인수인)가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때
- ③ 입소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(2008년 7월 1일 이전 입소자 제외)에는 변경 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
## 나) 계약해제

- ① **시설의 해제** :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른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해야한다.
  -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
  -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 - 예고 없이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  -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  -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  - 공동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 - 입소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등
- ② **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해제**:
  - 신원인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시설에 통보(유선 및 방문 등) 하고 통보된 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.
  - 입소자(신원인수인)는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.

## 3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가)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
- 나) 시설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(입소비용 등)에 대한 의무
- 다)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의무 등

## 4) 신원인수인의 권리

# 운영규정개요

- 나)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- 다)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- 라)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

## 5) 이용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

- 가)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(식재료비 등)를 말한다.
- 나) 입소비용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,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,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.
- 다) 입소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시설이 정한 후 시설운영위원회의를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
  -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시설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(신원인수인)에게 서신,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.

## 6)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

- 가)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항 1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제142조와 제143조에 따른다.
  - ①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케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.
  - ②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 - ③ 입소자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 - ④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 - ⑤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한다.
  - ⑥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
- 나) 출장 이·미용 등 입소자(신원인수인)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(신원인수인)가 부담한다.

## 7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

- 가)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소자(신원인수인)와 상의하여 처리한다.
  - ① 시설 내 특별침실에서 격리 보호 가능한 경우엔 특별침실을 이용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,
  - ②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, 병원치료가 어려울시 퇴소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병원치료 및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(신원인수인)가 부담한다.

# 운영규정개요

## 8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치

가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,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신원인수인(입소자)의 책임 하에 시설의 협약병원 또는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.
- ② 응급의료사항 발생 시 함열덕성원의 의료협약병원으로 응급이송과 의료처치를 하거나 신원인수인(입소자 또는 보호자)와 상의 후 신원인수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.
- ③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(병원비, 약값, 간병비, 입원 시 개인 필요물품 등) 비용은 수급자(신원인수인)가 부담한다.

## 9) 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

- 가) 입소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.
- 나)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발생시킨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- 다) 입소자는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써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라)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## 10)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며 따라서 민·형사상 책임과 천재지변,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, 자해, 자살, 탈주, 본인의 과실, 병사, 도난, 혹은 외출, 외박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이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 11)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매년 국가가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비용 및 본원 내부규정에 의거한다.